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15 선고 2024가단10448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유병연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지

담당변호사 정진호

변 론 종 결 2024. 8. 27.

판 결 선 고 2024. 10. 15.

주 문

- C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20. 10. 28.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5,934,07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5,934,0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3. 9. 4. C에게 7,0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이율 연 34.9%, 지연손해금율 연 34.9%로 하여 대여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5. 12. 21.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6. 4. 8. C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387276호로 C을 상대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양수받은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9. 28.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7,371,596원 및 그중 5,736,589원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0. 18. 확정되었다. 2024. 1. 16. 현재 위 양수금은 원금 5,736,589원, 양수전 이자 1,042,614원, 양수후 이자 16,279,133원을 합한 23,058,336원이다.

다.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0. 9. 23.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상속인들인 자녀들은 F, C, 피고가 있다.

마. 망인은 2016. 2. 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전부이다.

바. 망인의 사후 2020. 10. 28. F, C, 피고는, F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10 지분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9/10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F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9/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20. 10. 28. 접수 제14349호로 2020. 9.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었던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 외 다른 재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 사망 당시 채권최고액 205,000,000원, 근저당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무자 망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2021. 9. 9.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21. 9. 9.자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자. 이 사건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2020. 10. 28. 무렵인 2020. 10. 30. 기준 피담보채무 잔액은 61,197,775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당시인 2021. 9. 9. 기준 피담보채무 잔액은 52,282,053원(= 52,261,435원 + 20,618원)이다.

차. 이 사건 부동산의 2023년 12월경 가액은 79,00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법원 등기정보센터,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자취소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의 발생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채무자 C이 피고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였거나,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채무자 C 소유 지분 부분은 원칙적으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채무자인 C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그 부족이 심화되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될 것임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다만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또는 성립범위를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 C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리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피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나아가 피고는 채무자 C의 채무초과 사실 등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C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또한 C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협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가. 관련 법리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2)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2023년 12월경 가액은 79,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도 79,000,000원으로 추인되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되어 있던 부분은 위 79,000,000원에서
 사해행위 이후 말소된 근저당권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실제 피담보채권액
 61,197,775원을 제외한 17,802,225원인데, 그중 C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5,934,075원(=
 17,802,225원 $\times$ 1/3)이다. 그러므로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20.
 10. 28.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C에 대한 양수금채권 합계액 이내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C
 상속지분 상당액인 위 5,934,07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그 원상회복을 위해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5,934,0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방혜미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동두천시 동[도로명주소] 경기도 동두천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연립주택

1층 내지 3층 각 321.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동두천시 대 1097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55.68㎡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10972분의 96.15 ㎡

